

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소득*

김 종 규**

- I. 머리말
- II.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 III. 기본소득의 필요성
- IV. 기본소득의 한계와 공공소득
- V. 맺음말

•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서 인간 일의 의미와 협력적 소득으로서의 공공소득의 필요성을 문화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지만, 여전히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그것 역시 거대한 기술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16년 백악관 대통령실의 보고서는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AI-driven automation)라는 개념 하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고찰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 백악관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 변화의 미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6A7932134).

**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래에 대한 대응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이다. 노동자의 권한 강화와 고용보험 강화 등을 통한 임금보조 정책들이 그 핵심 정책들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유사 정책적 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은 일정부분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정책들에서 배제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본소득이 보조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더불어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적 소득으로서의 공공소득(public income)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 기본소득, 일, 공공소득

I. 머리말

과학적 경영기법으로 알려진 ‘테일러 시스템’은 근대 산업시대 속에서 인간의 ‘일’이 어떻게 규정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효율성을 인간과 기계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교 기준으로 정립하였다. 같은 기준 하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기계가 하는 작동과 직접적으로 비교되었다. 이 비교에 있어 인간 일의 의미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교를 위해 인간의 일은 기계의 작용처럼 측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비교가 초래한 상황은 기계에 비해 비효율적 도구로 간주되고 전락한 인간의 처지였다. 효율의 제고가 혁신의 중요함을 차지하게 될수록,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경향은 확산되었으며, 자동화시대에서 그 경향은 가히 폭발적이다.

자동화의 측면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 역시 그 연속선상 위에 놓여 있다.¹⁾ 자동화는 그저 과거의 산업혁명만을 규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자율화를 기술적으로 실현한 인공지능(AI) 역시 자동화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자동화가 보여주는 실제적인 차이는 그 대체의 폭이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완숙 단계를 논의할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은 그야말로 상상을 불허할 정도이다. 특히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이세돌의 패배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 4차 산업혁명의 주된 기술적 특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분산화, 자율성 그리고 연결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자동화와 구분하려는 시각이 존재한다. 자율화와 자동화는 개념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구분은 유의미하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은 자율화의 기술적 구현체인 AI가 자동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자동화 속에서 인간 노동의 대체가 공통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4차 산업혁명 역시 자동화의 연속선상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사실 무너진 것은 체스가 먼저였다. 체스 역시 바둑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중 가장 고도의 것으로 이해되는 일이었다. 체스 챔피언이었던 아나톨리 카르포프(Anatoly Karpov)는 자신이 젊었을 때 우러러 보았던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 바 있다. “나는 그저 이쪽 세계에 살고 있었고, 그랜드 마스터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다. 그들은 사실상 인간이 아니라 신이나 신화 속의 영웅 같은 존재였다.”²⁾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과 신화 속 영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신과 영웅은 인간의 대결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 인간은 신과 영웅이 차지한 곳에서 물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을 찾아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세대의 패배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 일의 리스트가 주목을 받은 이유였다.

정해진 대상은 이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자동화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자율적 판단의 수준도 매우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탄생보다는 성장이 더 빠른 기술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수준으로 미래를 낙관하는 것은 너무도 낙관적인 생각일 따름일 수 있다. 지나친 불안 역시 응당 문제이겠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단지 어리석음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다.

불안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가 극복해야만 할 문제이다. 근대 산업시대에서 규정된 일의 의미가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생각보다 깊고 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자리를 놓고 인간이 새로운 신과 영웅에 마냥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있을 새로운 자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모색

2)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제2의 기계시대』, 청림출판, 2014, 240쪽.

에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 새로운 자리는 예전처럼 신과 영웅의 틈에서 마련될 수 있을까? 혹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016년 미국 백악관 대통령실의 보고서(<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³⁾)를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새로운 신과 영웅을 맞이하는 것은 국지적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백악관의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처로서 인간의 일과 관련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일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차원의 활동으로 이해된다. 일의 위기는 곧 공동체의 위기인 셈이다. 일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 단지 일자리 수의 증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이유이다. 아쉬운 점은 그 대응책들이 주로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며, 사실 이러한 방식은 일의 문제를 다루었던 기존의 방식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백악관 보고서의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의 안녕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일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CEA) 의장이었던 펄만(Jason Furman)은 2016년

3)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Economy*, December, 2016.(이하, 백악관 보고서)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whitehouse.gov/files/documents/Artificial-Intelligence-Automation-Economy.PDF>, 2017.04.07.)

에 행한 한 연설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술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공포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제안되는 배경이지만, 그와 같은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은 자동화가 아니라 노동자이다.

핵심 문제는 자동화가 대다수의 인구를 고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것이라는 점이 아닙니다. 그 보다는, 노동자들이 자동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질 좋고, 고소득의 직업에 성공적으로 조응할 수 있는 기술 혹은 능력의 부족이 그 핵심입니다. 시장 경제는 노동자들을 새로운 직업 기회와 조응시키는 많은 일을 할 것이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보아왔듯, 그것이 늘 그렇게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고용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 포기에 전제를 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훈련, 구직 지원, 그리고 다른 노동 시장 기구들을 육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 기본 소득(UBI)보다 인공지능에 의해 제기된 고용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⁴⁾

이 연설의 내용에서 우리는 필만이 제시하는 일자리에 대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하며, 따라서 노동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 증진에 주력해야 한다. 필만의 연설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설 내용에서 그것만큼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미래에서도 우리는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와 같은 필만의 연설 내용을 간추려 실은 백악관 보고서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AI-Driven Automation)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4) 백악관 보고서, p. 38.

다루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초래할 부정적 결과, 특히 일자리와 경제적 이득의 분배 문제가 중점적 고려 대상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는 과거 기술발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파괴 및 조정 등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은 오랜 기간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만일 어떤 형태의 전환과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공유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정 그리고 공동체 모두 오랜 동안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⁵⁾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보고서는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책은 기술적 변화의 영향들을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 노동시장의 영향 역시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의존한다.⁶⁾

이와 같은 기조 아래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 영향에 대처할 세 가지의 정책적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 미래의 이득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투자, 미래 직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장의 몫을 두루 분배하기 위한 노동자 지원과 권한 강화가 그 핵심이다.⁷⁾ 이 세 각각의 전략들 뿐 아니라 이것들 서로의 밀접한 연관성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전략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임노동 중심의 사회이다. 기술적 진보가 가져온 이득과 혜택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주도 자동화의 개발과 투자 가치가 매우 큰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자동화가 초래하게 될 일자리의 대체이다. 기술적 발전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대체의 문제성을 경고한다.

5) 앞의 책, pp. 12~13.

6) 앞의 책, p. 23.

7) 앞의 책, pp. 27~42 참조.

…… 기술적 발전에 대하여 현재의 직업들은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702개의 세부 직업들에 대한 컴퓨터화(computerisation) 가능성을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 우리는 컴퓨터화 가능성을 토대로 고, 중, 저 위험 직업군을 구분하였다. …… 우리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총 고용의 47% 정도가 고위험 군에 속하였다. 우리는 이것들을 위험에 처해 있는 직업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아마도 다음 10년 혹은 20년 후면 자동화될 것이다.⁸⁾



물론 새로운 직업이 대체되는 직업들을 메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⁹⁾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이 개인들의 소득 향상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MIT의 맥아피와 브린윌프슨에 따르면, “기술적 진보가 파이를 키워나가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보장하는 경제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¹⁰⁾ 특히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많은 이득

8) Carl Benedikt Frey · Michael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University, 2013, p.44, (http://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academic/The_Future_of_Employment.pdf, 2017.04.07.)

백악관 보고서에서도 프레이와 오스본의 이 연구 결과가 인용되고 있다. 다만 백악관 보고서는 이 연구 결과를 OECD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의 9%만이 완전하게 자동화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백악관 보고서, p.14 참조) 하지만 9%의 경우에도 수백만 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율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9)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John W. Budd는 인공지능은 이전의 기술들과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며, 새로운 생산물들과 새로운 직업들을 창출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다수의 개인들이 고용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백악관 보고서, p.21 참조)

들은 사회와 혁신가들의 엄청난 부를 창출하지만, 그것은 노동수요의 감소뿐 아니라 개인, 특히 중산층의 소득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기술이 그래왔듯,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는 이러한 거대 디커플링(Great Decoupling) 현상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직업 대체의 위험이 상수(常數)로 고착될 가능성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이 제시된다. 미래의 일자리, 즉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에서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 교육과 일반인의 재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의 소득이 성장의 몫을 배분받도록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대 디커플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백악관 보고서의 세 번째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주축 기술들의 영향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디커플링 현상이 4차 산업혁명의 현재 혹은 미래의 상(像)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연관된 성장 이득의 분배를 골자로 하는 세 번째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 그 하나는 간접적인 정책들로, 사회 안전망과 고용보험 강화 그리고 새로운 직업 정보의 제공 등 보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정책들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그 수준을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접적인 정책들이 제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경제자문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일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협상력의 균형이 고용주 쪽으로 이전하고 있음이 점차 우려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귀결

10) Amy Bernstein · Anand Raman, “The Great Decoupling: An Interview with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acAfee,” *Harvard Business Review*,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June 2015. (<https://hbr.org/2015/06/the-great-decoupling>, 2017.04.03.) 왼쪽 도표에서 볼 수 있듯, 2000년대 내내 경제의 성장과 달리 직업 소득은 정체 혹은 하락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이들은 ‘the Great Decoupling’이라 부른다.

된 시장 집중은 이러한 경향들을 악화시킬 것이다.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에 의해 붕괴된 산업들에서 노동자들의 해고(displacement)는 중단기적으로 노동 시장에서의 여유를 만들 것이고, 임금은 하락할 것이다.¹¹⁾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된다면, 임노동 중심의 사회 구조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노동 중심 사회에서 임금은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기에, 이와 같은 분배 시스템의 붕괴는 공동체로서의 사회 유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지원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임금 보호와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세금 정책이다. 이를 위해 세 번째 전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Raise the Minimum Wage), 초과근무 현실화와 일의 확산(Modernize Overtime and Spread Work), 노동조합 강화(Strengthen Unions, Worker Voice, and Bargaining Power), 그리고 세금 정책(Protect Wages, Modernize Tax policy) 등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¹²⁾ 일자리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방식이 대단히 진보적일 뿐 아니라 매우 획기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상 이와 같은 해결책은, 미국 내에서도,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행정부는 …… 최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 노동 표준법과 노조의 결성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전국 노사 관계법NLRA을 통과시켰다. 강력한 노조 운동이 임금 개선을 위한 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경제를 윤택하게 해주는 추가적인 소비자 구매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 연방 조세 수입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비세를 낮추고 소득, 증여, 기업 이익 및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높여 경제를 촉진하려는 조세 정책 …… 그러한 아이디어는 <지나치게 쌓아둔> 돈을 부자로부터 거두어 들여 더욱 더 돈을 쓸 것 같은 중산층과 노동 계급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판매와 경제 성장을 부추긴다는 것이었다.¹³⁾

11) 백악관 보고서, p.38.

12) 앞의 책, pp. 39~41 참조.

이것은 1930년대 루즈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배경 역시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이었다. “1920년과 1927년 사이, 미국 산업의 생산성은 40퍼센트가 향상되었다. 제조업에 있어 단위당(사람/시간) 산출량이 1919년과 1929년 사이에 연간 5.6퍼센트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동시에, 2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제조업 부분에서만 82만 5000명 이상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¹⁴⁾ 물론 20세기 초와 지금 현재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의 영향을 하나의 기술 확산의 예로 본다면, 20세기 초의 미국의 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기술 확산의 문제, 즉 디커플링의 문제가 일회적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기술 확산의 새로운 양상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특정 시기나 단기간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현상으로 간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례의 결과를 통해 이와 유사한 현재 정책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 반성적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 정책이 사실상 절반의 성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알려져 있듯, 20세기 초의 디커플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이와 같은 정책보다는 오히려 전쟁이었다.¹⁵⁾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기술 확산 속에서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13) 제러미 리프킨 저,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6, 92쪽.

14) 앞의 책, 76쪽.

15) 제러미 리프킨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30년대 미국 및 여타 국가에서 수많은 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촉발했던 산업 시스템의 풍토병 같은 약점은 계속 국제 경제 사회를 괴롭혔던 것이다. 미국의 경제를 살려 주었던 것은 바로 세계대전이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지 1년 내에, 정부의 지출이 169억 달러에서 519억 달러로 경증 뛰어 올랐다. 1943년, 연방 정부의 전쟁 경비는 169억 달러 이상이 되었다. 실업이 1942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1943년 다시 그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앞의 책, 93쪽.

정책들의 실효성은 결코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지만, 유사한 정책들이 과거에 보여준 성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안정적인 공동체 유지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정책들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이유이다.

Ⅲ. 기본소득의 필요성

간접적인 정책들은 주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들로서 각종 보조적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⁶⁾ 예를 들어 실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 의료지원, 부분적 실업수당을 통한 임금 보조, 그리고 임금보험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생활비 지원과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개인들에게 식료품이나 금전을 지원하는 것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이 같은 지원의 목적은 필만의 연설 기조와 매우 흡사하다.¹⁷⁾ 현재와 같은 임노동의 구조를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 시대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제안들은 이미 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업 충격(impacts)들의 지속을 대비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단계들을 나타낸다. 그러나 만일 인

16) 백악관 보고서에는 “사회 안전망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라(Modernize and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라는 항목 아래, ‘고용보험을 강화하라(Strengthen Unemployment)’, ‘노동자들에게 직업 이전을 안내할 개선된 안내서를 제공하라(Give Workers Improved Guidance to Navigate Job Transitions)’, ‘그 밖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라(Strengthen Other Safety Net Programs)’의 세부 항목들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 pp.35~37 참조.

17) 앞서 언급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의장인 필만의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의 비판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에 담겨 있다.

공지능의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강렬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도래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영향 받은 직업의 수가 프레이와 오스본의 예측에 근접한다면, 고용보험 체계는 경제적 붕괴의 규모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동력 인구(labor force)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게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⁸⁾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미래에서도 노동자의 노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은 그 개인뿐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족 및 공동체의 유지에 매우 핵심적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보조정책의 필요성은 너무도 당연한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유사한 상황의 반복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지속성이다. 앞서 논의되었듯, 임노동 기반 사회의 위기가 특정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정책이 그러한 반복에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백악관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보조정책이 충분한 대안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조정책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노동력 인구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고용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필만의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과 고용보험 강화 등의 보조정책들은 일자리의 위험이나 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로, 소득 보조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보조정책 역시 필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정책과는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경계는 왜 세워지는 것인가? 이 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꽤 오래 전의 사건 하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산업사회

18) 백악관 보고서, p.36.

에서의 보조정책의 연원으로든 간주할 수 있는 스피넨랜드 체계가 그것이다.

스피넨랜드(Speenhamland) 체계라는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은 1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던 18세기 말이었다.¹⁹⁾ 스피넨랜드 체계는 지금의 정책 구성에 비한다면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역사가 에릭 홉스봄에 따르면, 1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1790년대에 이르러 토지의 대다수를 지주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당시 마을 빈민들의 곤궁이 매우 심하였으며, 이에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존비 지급을 위해 국가를 기준으로 최저율을 정하여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 가난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끔 한 정책이 바로 스피넨랜드 체계였다.²⁰⁾ 칼 폴라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스피넨랜드 법이라는 ‘수당 체계’(allowance system) …… 그 방향은 …… 국가 가부장주의(paternalism)의 노동 조직 체제를 확실하게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795년 5월 6일 버크셔의 판사들은 …… 노동자들이 받는 여러 종류의 임금을 부조하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보조금의 양은 빵 가격의 변동에 연동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¹⁾

스피넨랜드 법이 시행된 이유는 빈곤 때문이었다. 만일 노동자들의 임

19) 스피넨랜드는 영국 버크셔의 한 지역명이다. 문건에 따라 스피넨랜드 혹은 스피넨햄랜드로도 표기되고 있으나, 다 같은 지역을 표현하는 말이다. 스피넨랜드 체계는 구호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었으며, 비록 정식적인 법령을 통해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스피넨랜드 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1795년에서 1834년까지 유지되었다.

20) 에릭 홉스봄 저, 전철환·장수한 역, 『산업과 제국』, 도서출판 한빛, 1984, 91~97쪽 참조.

21) 칼 폴라니 저,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2009, 251쪽.

금이 충분했거나 일자리가 충분했다면 결코 그러한 보조금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피넘랜드에서는 최소한의 기준, 즉 생존을 위한 금액을 정해 놓고²²⁾ 기존 소득과의 비교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예를 들어, 표준적인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 이러한 보조를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²³⁾ 필요한 지원의 제공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며, 빈곤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안정성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홉스봄과 플라니는 스피넘랜드 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홉스봄에 따르면, “..... 스피넘랜드의 중요성은 경제적이라기보다 사회적이었다. 그것은 시장경제에 반하여 전통적인 농촌질서를 유지시키려는 최후의 비효율적이고 잘못 생각한 비성공적인 시도였다.”²⁴⁾ 플라니는 더 나아가 아예 그 법이 도입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²⁵⁾ 그것은 그 정책이 이러한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했다는, 그리고 나아지게 할 수도 없었다는 판단에서였다. 임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임금의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그 보조로 인한 임금의 균등화로 인해 노동의 의욕이 상실되고, 그 결과 생산성이 하락되었으며, 그리고 이 생산성의 하락은 다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준 임금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는 고용주들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²⁶⁾

스피넘랜드의 사례를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백악관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보조정책과 기본소득의 경계를 다시 한 번 조망해 보기 위해서이다.

22) 이 기준은 성인남자가 1주일에 3갤런, 약 12킬로그램 정도의 빵 값에 해당하는 소득이었으며,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되었다. 플라니의 설명에 따르면, “1갤런의 빵 가격이 1실링 6펜스일 때 본인 몫으로 주당 4실링, 거기에 더하여 가족 몫으로 한 명당 1실링 10펜스를 보장받는다.”, 앞의 책, 251쪽.

23) 이러한 점에서 스피넘랜드 법은 기본소득과 다르다.

24) 에릭 홉스봄, 『산업과 제국』, 98쪽.

25) 칼 플라니, 『거대한 전환』, 250쪽.

26) 앞의 책, 253쪽.

물론 이처럼 오래 전 사례를 그대로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의 미래로 그대로 투영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이 예는 현재와 달리 산업 혁명의 초기 농촌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며, 백악관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여타의 보조 정책들도 없었다. 더욱이 시대적, 기술적, 의식적 차원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피넨랜드 법의 시행과 그 파기 과정 속에는 보조정책과 기본소득 간의 논의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의 이념을 담겨 있다. 개인을 경제적 동물로 규정하는 것과 일의 표준화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피넨랜드 법이 초래한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은 빈둥거리고 놀아도 생활비를 얻을 수 있다면 아무도 일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⁷⁾ 공짜 돈은 제공되지 말아야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 그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스피넨랜드의 실패가 공고화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이념이었다.

‘스핀햄랜드’는 …… 빈민법을 부르조아계급의 이상(理想)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였다. 그들의 이상이란 (a) 빈민법 시행을 위한 비용을 가능한 한 값싸게 만들며 (b) 그것을 잠재적 실업이나 명백한 실업의 구제뿐만 아니라 실업노동력을 자유노동시장으로 내모는 도구로 사용하며 …… 어떤 경우든 빈민구제는 임금이 가장 낮고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직업보다도 더욱 형편없는 것이어야 했다.²⁸⁾

경제적 동물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공짜 돈이 아니라 자유로운 노동 시장이라는 것이 스피넨랜드의 실패에서 당시의 부르조아 계급이 얻은 교훈이었다. 생활비와 같은 개인의 소득은 경제적 활동의 공간인 자유로운 노동시장 속에서 취득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

27) 앞의 책, 252쪽.

28) 에릭 홉스봄, 『산업과 제국』, 212쪽.

해, 인간의 일은 그에 알맞게 변경되어야 했다. 일의 상품화가 바로 그것이며, 인간의 일은 상품으로서의 노동으로 규정되게 된다. 이로써 사회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기초로 한 임노동 중심의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스피넨랜드의 교훈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정책이다. 그것은 경제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빈둥거리게 할 뿐이다. 필요한 방안은 공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스피넨랜드 시대와는 여러모로 다르겠지만, 이 두 이념, 경제적 동물로서의 개인과 일의 표준화는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의 미래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듯 보인다. 필만처럼, 기본소득 정책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정책이라는 주장은 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따름이다. 다른 것은 보조정책을 유지하는 것, 즉 시장으로만 내모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한정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념이 고수되는 한, 공동체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공동체 내 인간 활동의 목적은 단지 소득이라는 목적으로만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생존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을 때, 인간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인간에 대한 매우 좁은 이해의 소산일 따름이다. 이 주장은 인간이 경제적 동물이라는 관점 하에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관점 하에서, ‘일’은 소득을 위해 판매한 상품으로서의 ‘노동’이며, 만일 그 목적이 미리 주어진다면, 인간은 노동이라는 활동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일이 이 같은 의미로 이해된 것은 사실 인간의 전 역사에 비추어 보면 매우 짧은 순간에 해당할 뿐이다. 인간의 전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 아닌 문화적 존재였으며, 이 같은 이유에서 인간의 일을 단지 산업적 생산 도구로서의 노동에 한정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일은 인간의 품격,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의 실존적

처신이다.”²⁹⁾ 노동은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 처신의 전부일 수 없다. 이러한 노동의 시각으로 인간의 일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인간의 일은 매우 좁은 영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일을 실존적 처신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일에 대한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일에 대한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의 의미를 보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일의 다양성과의 조우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소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일을 단지 노동으로 한정시켜 보더라도, 기본소득은 그것을 배제하려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조망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기본소득이 ‘빈둥거리며 놀아도 얻게 되는 생활비’가 결코 아니며, 더욱이 그것은 국가의 호의와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허버트 A. 사이먼의 공정성 논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의 토대가 된다.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사이먼은 그의 말년이었던 2000년의 한 강연에서 공정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생산의 분배에 관해 논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시장은 소득과 부를 우리의 공정성의 개념을 만족시킬 정도로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공정성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며, 따라서 과학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한다.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대부분이 살고 있는) 미국사회의 일원들로서 현재 얻는 소득을 고려하고, 그것을 당신이 중국이나 인도 사회의 혹은 또 다른 제3국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서, 당신이 별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득과 비교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중 대부분에 있어, 그 두 소득의 차이는 한자리 혹은 그

29) 이종관, 「미래인문학으로 보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미래인문학적 시각에서 본 기술 문명의 향방』, 2016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6.12.9, 7쪽.

이상의 자리 차이, 즉 적어도 10대 1과 아마도 100대 1 이상일 겁니다.³⁰⁾

이 질문의 요지는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차이의 원인은 개인들의 노력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미국이건 중국이건 인도이건 제3국 어디에서건 동일한 강도의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소득의 차이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 차이는 오히려 미국이라는 사회 시스템 속에 있다는 일종의 행운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매우 관대하게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리가 5분의 1만큼 “번(earned)”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는 엄청난 생산적 사회 시스템과 연관된 세습재산입니다. 그 시스템은 광대한 물질 자본 뿐 아니라 심지어 지식, 기술 그리고 우리 모두에 의해 보유되는 조직적 노하우를 포괄하는 많은 양의 지적 자산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재능 있는 동료 시민들의 상호작용은 이와 같은 많은 양의 지식과 노력 없이 번(uneared) 소득의 관대한 몫 모두를 우리에게 이전시키게 됩니다.³¹⁾

사이먼에 따르면, 양극화와 같은 지나친 부의 편중은 그 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노력에서 연원되는 것이 아니다. 부의 창출은 대부분 시장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시장은 공정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배를 할 수 없다. 그 시장이 전제될 때, 더욱이 그 시장이 자유로운 시장일 때, 부의 편중은 시장 시스템 속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와 같은 인지자본주의의 시대에서 모두가 축

30) Herbert Simon, “Public Administration in Today’s World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3(4), 2000, p. 755, (<http://digitalcollections.library.cmu.edu/awweb/awarchive?type=file&item=34322,2017.04.06>.)

31) Ibid., p. 756.

적해 온 지적 자산의 독점은 사이먼이 지적한 공정하지 못한 분배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치 구조화된 초과이윤을 가능하게 하는 토지처럼 자본가들은 인지토지의 소유자로서 특별한 초과이윤, 즉 지대를 향유한다고 보았다. 자본가들은 이 지대를 구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통한 지식 독점에 나선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재산권을 넘어선 초과이윤도 있다. 그것은 네트워크 외부성, 생산-소비자(prosumer)의 구성을 통해서이다. 구글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구글메일(www.gmail.com)을 통해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고 이 선호를 바탕으로 타켓광고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여기에 구글 노동자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는 것 외에 없다. 나머지 모든 가치생성과정은 사용자들이(무의식중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지적 착취의 내용이다.³²⁾

구글 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이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경품행사 등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수익을 챙긴 홈플러스의 무죄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건은 개인의 정보가 그 자체로 소득의 원천임을 잘 보여 준다.³³⁾ 그렇지만 이것이 기업들의 부도덕성에서만 기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식 가치 중 상당 부분, 아니 사실상 대부분은 네트워크 효과, 시장 지배력, (우리 정부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준 선물인) 저작권 보호 등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다.”³⁴⁾ 이러한

32) 안현효,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2012.2, 140쪽.

33) “대법 “1mm 깨알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아니다”.. 파기환송”, <경향신문>, 2017년 4월 7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704071033011, 2017.04.07).

34) 피터 반스 저, 위대선 역,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2014, 86~87쪽. 피터 반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수십 년 동안 학교, 반도체, 인터넷에 투입된 공공 투자, 수세기에 걸친 과학의 진보, 자연의 아낌없는 관대함(인터넷을 가동하느라 드는 연료와 대기를 생각해

점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생산의 몫은 단지 노동을 제공했는가의 기준으로만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이들 정보는 생산에 활용되고 이득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분배의 공정성은 노동력에 대한 것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인지적 정보의 제공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몫을 기본소득으로 본다면, 기본소득은 개인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생존비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들의 당연한 몫이자 배당이며, 비생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생산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노동자들이 고용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 포기 전제를 둔 정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생산영역 내에서 임금과는 별개로 당연히 분배되어야 할 개인의 몫일 따름이다. 기술적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현재의 기술이 전개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에는 이와 같은 인지적 정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러한 점에서, 그 미래의 표현이 어떠한 간에, 즉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든 혹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든 간에, 그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기본소득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기본소득의 한계와 공공소득

미래사회의 기술적 변화는 비단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우리 역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

보라) 덕을 보았다. 이 모두를 고려해 보면 빌 게이츠는 온전히 스스로 벌었다 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부를 가져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형성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중에 있다. 현재는 주로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 인프라 및 투자 중심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일자리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본소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점에서 기인되는 것은 아니다. 허버트 사이먼의 말처럼 공정 분배는 시장이 아닌 가치의 문제이기에, 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여야 하며, 다양한 의견의 대립은 동반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동의되더라도 남는 문제는 기본소득의 수준이다. 기본소득이 산업생산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산업생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거래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기본소득만으로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정도의 소득 수준에는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제한적 입장은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반자본주의적 시각에서도 발견된다.

……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미리 말해 둔다. 기본소득 금액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쉽게 일을 그만두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을 높게 책정하려는 것은 기만적이다. …… 왜냐하면 월 1700유로어치의 재화를 소비한다는 것은 월 1700유로 상당의 재화를 생산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소비하려고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러한 소비에 익숙해질 즈음 우리는 여전히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할까?³⁵⁾

35) 바티스트 밀롱도 저, 권효정 역, 『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다출판사, 2014, 50~51쪽.

기본소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미래 기술사회의 일자리 문제의 상관성은 매우 낮아지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전제할지라도, 산업생산영역의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감소된다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정성 저해 문제는 - 비록 기본소득 제공 전보다는 나은 상태이겠지만 - 지속될 수 있다. 설혹 당장은 어느 정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의 효율성 혁신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산업생산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상 일자리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제한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우리와 같은 산업생산 위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안정성 문제에 대하여 기본소득 이상의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제러미 리프킨에게서 우리는 기본소득 외의 또 다른 소득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비록 기본소득을 전제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리프킨은 노동과는 다른 일에서 소득의 또 다른 원천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의 종말』에서 그는 효율화와 자동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대체의 현상을 담담히 기술하면서, 인간에게 닥친 노동의 종말이라는 위협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몰두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남은 일자리를 나누고, 그 임금의 부족분을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와 시장은 그가 선택하는 대안에 속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기능을 시장과 정부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세계 시장의 물리력과 미약하고 무능한 중앙정부의 권위에 대항할 활기 있는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³⁶⁾ 그리고 그 핵심 요지는 정부와 시장 외의 제3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6)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341쪽.

제3부문은 독립적 또는 자원적 부문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은 공동체 연대가 금전적 장치를 대체하고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주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데 근거한 인위적인 시장 관계를 대체하는 영역이다. …… 공동체 서비스는 세상만사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나오며 개인의 부채 의식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이것이 종종 수혜자와 후원자 간 경제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교환이다. 이 점이 공동체 서비스와 물질적 내지 금전적 교환이자 경제적 손익이 사회적 결과보다 우선시되는 시장 행위와의 차이이다.³⁷⁾

리프킨의 제안은 산업생산영역의 일자리는 자동화로 인하여 점차 줄어들 것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눔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그 임금의 부족분은 제3부문의 금전적 장치, 리프킨의 표현으로는 ‘그림자 임금’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그림자임금이 사회적으로 확장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임금이 된다. 그에 따르면,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항구적 실업자들이 제3부문에서 재훈련받고 배치되도록 고무하기 위해서 복지 지출의 대안으로써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는 안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는 비영리 조직들이 이들을 자신의 조직에 충원하고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보조해야만 한다.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대가로 전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지출의 대안으로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수혜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이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에도 도움을 준다.³⁸⁾

이와 같은 활동의 대가들이 *그림자* 임금 혹은 *사회적* 임금이라 불리는 것은 그 활동들의 의미와 성격이 시장이나 정부와 같은 공적 혹은 사적 영역 내에서의 활동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문제와 공동체의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프킨이 제시하고 있는 제안들은

37) 앞의 책, 343~345쪽.

38) 앞의 책, 362쪽.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그 하나는 이 임금의 재원이다. 수혜자와 후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개인적으로 처리될 터이지만,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임금의 경우 그 재원의 주 원천은 세금이다. 물론 기존에 기업들에 제공되었던 기업보조금을 철폐하는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되었지만, 그 보조금도 원래 세금이었으며, 또 다른 방안인 방위 프로그램의 축소나 부가가치세 역시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이다.³⁹⁾ 물론 세금을 활용한 재원 마련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세금 사용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적 임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임금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흡사 임노동처럼 그 임금에 조응되는 행위를 전제로 지불되는 것이다. 비록 산업생산영역의 노동과 같은 수준의 상품화된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임금을 매개로 한 일종의 계약을 기초로 하게 된다. 이른바 그림자 노동인 셈이다. 계약상 임금을 받는 자는 그에 따른 활동을 대가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비록 그 활동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도, 그 활동이 임금을 매개로 의무로 규정되는 한, 그것은 일종의 강제된 노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게 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리프킨의 제안은 꽤나 매력적이다. 상품화된 일로서의 노동 외에 공동체 내의 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소득이 기본소득과 연계된다면, 매우 큰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만일 사회적 임금이 기본소득과 실제로 결합될 수 있다면, 기본소득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수준의 소득 구성을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안은 일의 강제성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39) 앞의 책, 372~378쪽 참조.

4차 산업혁명이 공동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많은 우려들은 우리의 삶이 산업영역에 얼마나 많이 의존해 왔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존성은 비단 지금만의 일은 아니었다. 그간의 기술 확산과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 온 내홍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근대 산업사회가 규정한 것처럼 인간의 일이 오로지 상품화된 노동이라면, 노동의 대체는 인간 일의 대체일 따름이며, 일이 인간의 품격이고 실존적 처신이라면, 일의 대체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셈이다. 만일 인간의 일이 이러한 제한성을 넘어서 있었다면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산업영역에서의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면, 산업영역에서 진행되는 일의 대체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그 근저에서부터 위협할 정도의 위협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산업영역의 일이 모든 일을 포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산업영역의 일을 포괄할 수 있는 일의 다양성을 위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이 다양성 속에서 인간의 일은 강제가 아닌 자유에 기초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⁴⁰⁾

일의 다양성은 결코 소득과 분리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일의 다양성 시각에서 거부하는 것은 소득이 일을 규정하는 방식일 따름이다. 우리의 삶이 소득에 의존적일 때, 일의 다양성은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반복되었던 것도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일이 다양할 수 없었던 것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공동체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지속될 수 있으려면,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인간의 일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이분법, 즉 정부(公)와 시장(私)이 일을 단일하게 규정해 온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의 다양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⁴¹⁾ 일의 다양성을

40) 일의 다양성 개념은 이종관, 「미래인문학으로 보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참조.

41) 리프킨이 공동체적 활동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3부문’은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금을 재원으로 한 사회적 임금처럼, 공적 영역에

회복할 때, 일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일과 소득이 맺는 다양한 관계망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상품화될 이유가 없는,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문화적 활동 역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과 사의 이분법에 기초한 소득과 달리 공동체 내의 자유로운 일에 기초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문화적 소득을 ‘공공소득’⁴²⁾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또한 기본소득과 더불어 우리의 미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의 논의 주제여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각종 센터들이 설립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혹은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등 명칭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저마다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이 입주할 수 있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소득 창출을 촉진 중에 있다. 이 활동들 모두 넓게는 ‘공공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은 그 각각이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예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42) 공공소득(public income)은 개인들 간, 집단 간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자유로운 교차와 융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마을을 기초로 한 우리의 옛 두레와 같은 상호협력에 기초한 일의 교환과 수익 모델은 공공소득의 고전적 모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소득은 ‘협력적 소득(cooperative income)’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명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공공소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사 형태의 모델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OPENCOLLEGE>(https://www.opencollege.kr)와 같은 형태의 조직은 향후 협력적 소득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점이다. 이 플랫폼은 물리적 공간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한 활동이 서로 교차하고 융합하며 확장될 수 있는 터로서의 기능적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현재 이 터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교차와 융합 그리고 확장 속에서 기존의 산업영역에서는 시도되기 어려웠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이 일들을 기반으로 소득을 획득하는 일련의 공공소득 창출이 실험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와 같은 플랫폼들 대부분이 지방 정부의 기획과 통제 하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적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투자는 필요하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도 이 센터들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공간들 역시 그간 일을 규정해 온 이분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곳 역시 산업생산의 하부조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 플랫폼들은 일의 다양성의 토대가 아닌 또 다른 산업생산의 부속품이 될 공산이 크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자체의 지원으로 플랫폼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그 본연의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다면, 플랫폼의 독립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원금의 회수와 같은 방식을 통해, 플랫폼의 운영이 보다 독립적으로 자유로워질 필요도 있다. 제3부문과 같은, 이른바 공과 사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모두와 함께 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공(公共)’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논란 중임을 감안한다면, 공공 공간에 기초한 공공소득 논의는 어쩌면 너무도 요원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간과 소득 논의의 필요성을 촉진하고 있다. 물론 당장의 위험은 아닐지라도, 그것의 도래가 초래할 위험이 지금까지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의 변화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위험과 희생을 감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산업의 변화가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

은 인간의 위험과 희생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건 간에, 인간의 미래를 위한 공공 공간과 공공소득 논의가 그저 요원한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

뉴바티스트 밀롱도 저, 권효정 역, 『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다출판사, 2014.

안현효,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2. 124~143쪽.

에릭 홉스봄 저, 전철환·장수한 역, 『산업과 제국』, 도서출판 한벗, 1984.

이종관, 「미래인문학으로 보는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미래인문학적 시각에서 본 기술 문명의 향방』, 2016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6.

제러미 리프킨 저,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6.

칼 플라니 저,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2009.

피터 반스 저, 위대선 역,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2014.

“대법 “1mm 깨알 고지한 홉플러스 무죄 아니다”.. 파기환송”, <경향신문>, 2017.4.7.(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704071033011, 2017.04.07.).

Bernstein, Amy · Anand Raman, “The Great Decoupling: An Interview with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acAfee,” *Harvard Business Review*,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June 2015, (<https://hbr.org/2015/06/the-great-decoupling>, 2017.04.03.).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Economy*, December, 2016,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whitehouse.gov/files/documents/Artificial-Intelligence-Automation-Economy.PDF>, 2017.04.07.).

Frey, Carl Benedikt · Michael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University, 2013, (http://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academic/The_Future_of_Employment.pdf, 2017.04.07.).

Simon, Herbert A., “Public Administration in Today’s World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3(4), 749-756. 2000. (<http://digitalcollections.library.cmu.edu/awweb/awarchive?type=file&item=34322>, 2017.04.06.).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ublic Income

Kim, Jonggyu*

The present paper aims to claim the necessity of the public income along with the basic income. There are worries about the futu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lthough the defini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still not clear, it is certain that it shows a huge technological change like other industrial revolutions. The report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S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2016*) deals with the changes. It develops strategies and policies to respond to those changes. To establish our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the future of the change,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contents of the report. In this repor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for the future is to empower workers to ensure broadly shared growth. Strengthening unemployment insurance, labor unions, and increasing worker's bargaining power are the key policies. However, compared with past similar policy cases,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should be reconsidered to a certain extent, and it seems necessary to change the position on the basic income that is excluded from these policies.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basic income is only supplementary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change of future society more fundamentally. In this sense, this paper suggests the public income as the cooperative income.

* Institute of hybrid future culture, Sungkyunkwan University

Key words: 4th industrial revolution, AI-driven automation,
basic income, work, public income

필자 E-Mail: circuit72@skku.edu

투고일 2017년 03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7년 04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4월 27일